#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66 발의연월일: 2021. 3. 22.

발 의 자: 안호영·장철민·송옥주

윤준병 • 노웅래 • 임종성

양정숙・이수진비・강민정

윤미향 • 이원택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 「고용보험법」은 예술인·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전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.

그러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 제공계약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, 임신 후에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 어려울 수 있어 출산전후급여등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.

따라서 출산 또는 유산·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였던 사람을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예술인인 피보험자였던 사람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함(안 제77조의4제1항).
- 나.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였던 사람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함(안 제77조의9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85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7조의4의 제목 중 "예술인인 피보험자의"를 "예술인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"피보험자가"를 "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"로 한다.

제77조의9의 제목 중 "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"를 "노무제공자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"피보험자가"를 "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 였던 사람이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아 혅 했 개 정 법률 제17859호 고용보험법 법률 제1785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4(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제77조의4(예술인의 출산전후급 출산전후급여등) ① 고용노동부 여등) ① -----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 | ----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 산 또는 유산・사산을 이유로 였던 사람이-----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출산전후급여 등(이하 "출산 전후급여등"이라 한다)을 지급 한다. 다만,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 여등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 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급한다. ②·③ (생 략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77조의9(노무제공자인 피보험 제77조의9(노무제공자의 자의 출산전후급여등) ① 고용 후급여등) ① -----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 -----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 사산 피보험자였던 사람이-----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. 다만, 같은 자녀에 대

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	
가 급여등 또는 제77조의4 제1	
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	
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지급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